

무악 1학사, 무악 2학사, 무학4학사B동, 우정원 이용내규

생활권 내규 다운로드

제정 1998.06.10.
개정 1999.12.14.
개정 2003.02.11.
개정 2003.11.18.
개정 2007.05.11.
개정 2007.11.16.

제 1장 총칙

[제1조 목적]

• 무악 제1학사 및 제2학사 이용내규(이하 제1,2학사 내규'이라 함)는 생활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, 자유의 규율이 조화되는 기숙사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활권 무악 제1학사 및 제2학사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입사자들이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제2조 이용]

• 생활권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입사자에 한한다.
• 생활권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숙사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관장은 입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기숙사의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.

[제3조 출입시간]

• 입사자는 다음과 같이 기숙사의 출입시간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.

<div> <div>▶ 문 여는 시간 - 05:00</div> <div>▶ 문 닫는 시간 - 02:00</div> <div>▶ 대학원생, 간호사 수련의는 출입시간 제한 없음</div> </div>

• 전항의 출입시간에 대한 예외를 생활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.

제 2장 입사

[제4조 입사자격]

• 기숙사의 입사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

<div> <div>▶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방거주자 또는 해외거주 학부, 일반 대학원 및 전문 대학원 재학생.</div> <div>▶ 직전 학기의 성적이 1.7/4.3 이상, 대학원생은 2.0/4.3 이상인자</div> <div>▶ 기타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서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</div> </div>

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

<div> <div>▶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</div> <div>▶ 범죠행염병 질환자로서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한 자</div> <div>▶ 휴학자</div> <div>▶ 생활관에서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자</div> <div>▶ 기타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</div> </div>

[제5조 입사선발]

• 기숙사의 입사선발은 다음과 같이 정기, 중간입사 선발이 있다.

<div> <div>▶ 정기입사선발은 매 학년도 개시 전에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</div> <div>▶ 중간입사선발은 졸업, 휴학 및 미등록으로 발생된 결원을 2학기에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.</div> </div>

• 매 학기의 결원차 보충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 입사선발 기준에 따라 입사자를 선발한다.

[제6조 입사서류]

• 무악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생 선발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입사원서 등의 서류를 입력 및 제출하여야 한다.

<div> <div>▶ 입사신청서(인터넷으로 입력)</div> <div>▶ 부모 및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1부 (해외거주자인 경우는 가족의 해외 거주 증명서 1부)</div> <div>▶ 복학생의 경우 복학생 서약서(소정양식) 1부</div> </div>

[제7조 입사등록]

• 입사예정자에 선발된 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입사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<div> <div>▶ 입사서약서(소정양식) 1부</div> <div>▶ 건강검진(총부 X선) 결과서 1부</div> </div>

[제8조 입사허가기간]

• 기입입사의 허가기간은 1년(개학 일로부터 당해 연도 학사일정 종료일 까지)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1학기에 입사한 사생의 2학기 연장은 생활관에서 지정한 날짜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만하며 미납 시에는 2학기 연장은 취소된다.

• 2학기 중간입사의 허가기간은 당해 연도 학사 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.
• 생활 중에는 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쳐 간류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은 생활관에서 별도로 정한다.

[제9조 기숙사 방배경]

• 기숙사의 방배경은 생활관 배정원칙에 의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되, 기간 내 미추첨자 및 중간 입사자는 생활관에서 배정한다.

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방은 생활관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제 3장 입사자의 권리·의무와 책임

[제10조 사생증과 출입증]

• 기숙사의 허가된 입사자는 사생증 또는 출입증을 발급 받는다.
• 입사자는 전항의 사생증 또는 출입증을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• 사생증 또는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 1매를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, 재발급 3회 이상 시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.
• 사생증 또는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.

[제11조 외박신고]

• 입사자의 외박은 다음과 같이 단기외박과 장기외박이 있다.

<div> <div>▶ 단기외박 : 공휴일을 포함한 8일 미만의 기간 동안 외박하는 경우</div> <div>▶ 장기외박 : 공휴일을 포함한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외박하는 경우</div> </div>

• 외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실에 비치된 외박 대장을 사전에 작성한다.
• 외박 대장 미작성자가 외박을 한 경우는 무단외박으로 간주되며 벌점을 부과한다.
• 외박으로 인한 입사자의 납부금은 감면되지 아니한다.

[제12조 납부금]

• 입사자의 관리비는 생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납부 한다.
• 납부금 미납자는 입사를 취소한다.

• 진전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일 1일전까지 취소 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, 공식 입사일 이후부터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입수에 대해 환불한다. 단, 13주차 이후 퇴사시 환불금액 없음

단, 군 입대 또는 질병(의사진단서 첨부)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• 강제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일부터 13주차까지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입수 환불금액의 90%를 환불한다.

단, 13주차 이후 강제 퇴사 시 환불금액이 없으며, 향후 재입사가 불가함.

[제13조 식당이용]

• 식사는 자율 배식을 원칙으로 한다.
• 식권은 매점에서 구입한다.
• 입사자는 식사 시 사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• 입사자는 식당 이용 시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.

[제14조 생활관내 금지사항]

• 입사자는 사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<div> <div>▶ 음주 . 도박 . 폭행 행위</div> <div>▶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</div> <div>▶ 각종 전자기,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</div> <div>▶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</div> <div>▶ 시설물에 낙서를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허가 없이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</div> <div>▶ 공공이용물(예: 청소기, 컵, 다리미, 전기간행물 등)을 무단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</div> <div>▶ 사내에서 흡연하는 행위</div> <div>▶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</div> <div>▶ 여학생이 남학생의 방에 출입 또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</div> <div>▶ 사내에서 광고를 무단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</div> <div>▶ 외부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</div> <div>▶ 외부인을 허가 없이 사생실로 대동하는 행위</div> <div>▶ 사내에서 애반동물들 사육하는 행위</div> <div>▶ 방안에서 취사를 허가나 식사하는 행위</div> <div>▶ 그 밖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</div> </div>

[제15조 협조 의무]

• 생활관장은 사관단 이외에 전조의 금지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 담당자를 위촉할 수 있다.
• 전항의 점검담당자와 사관단이 기숙사의 방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• 전 항의 점검담당자는 긴급한 시설점검, 화재, 안전사고, 보안 및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생이 재시하지 않더라도 방에 출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.

[제16조 실비변상 의무]

• 생활관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생활관장이 정하는 실비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

[제17조 화기단속과 청소 등]

• 입사자는 자기 방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 공동공간의 정리 . 정돈과 청결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• 입사자는 쓰레기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.

[제18조 전자기기의 사용]

• 전자기기의 사용은 입사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.

<div> <div>▶ TV, 소형 라디오, 카세트, 전기면도기, 헤어드라이기는 개인 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.</div> <div>▶ 개인용 컴퓨터는 개인 방 또는 도서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.</div> <div>▶ 다리미는 사내의 세탁실에서만 사용한다.</div> </div>

•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, 생활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.

[제19조 문단속]

• 입사자는 귀중품이나 현금 등 고가품을 방안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, 개인물품의 분실은 생활관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.
• 입사자가 방을 비울 때는 반드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[제20조 면회]

• 입사자는 외부인의 면회를 지정된 장소(현관 로비)에서 지정된 시간 (09:00 - 22:00)내에 행하여야 한다.

• 면회자는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면회자의 명부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 4장 벌점

[제21조 벌점부과]

• 벌점은 별지의 <벌점 기준표>에 의하여 부과한다.

• 1항의 의하여 부과된 벌점은 합산되어 4학기동안 유효하며, 이후 기숙사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< 23쪽 벌점 기준표 참조 >

[제22조 상경부과]

• 상경은 별지의 <상경 기준표>에 의하여 부과한다
•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동안 벌점이 있는 학생은 해당 상경을 받은 만큼 벌점을 감할 수 있다. 다만, 강제퇴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제23조 제재]

• 생활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

<div> <div>▶ 경고처분 :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</div> <div>▶ 퇴사처분 : <벌점 기준표>에 제시된 퇴사행위에 해당되거나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일 경우</div> </div>

[벌점기준표]		
번호	내용	벌점
1	기숙사내에서 폭행, 절도 등 형사상 범법행위	퇴사
2	대리입사자 및 제공자, 무단 입사(숙박)자 및 제공자	퇴사
3	여학생이 남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/ 남학생이 여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	퇴사
4	기숙사내에 인화물질, 위험물을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	퇴사
5	기숙사내에서 음주(술병 포함포함), 흡연(호실내 풍초 발견포함) 도박행위	퇴사
6	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을 기숙사 방으로 대동하는 행위	퇴사
7	학생증 또는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	5점
8	전용 기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	5점
9	기숙사내에서 흡연하는 행위(호실내 풍초 발견시 동일 적용)	5점
10	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몰래 수령하거나 개봉하는 행위	5점
11	각 학생들의 정문이 아닌 비상문 및 창문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	5점
12	기숙사내의 공공이용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방안의 시설이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	4점
13	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는 행위	3점
14	기숙사 내 . 외에서 소란 또는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	3-5점
15	점검 시 비협조적인 태도	2점
16	출입시간을 위반한 행위	2점
17	장기 무단 외박자	2점
18	낙서, 허가받지 않은 부착물의 철부,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	2점
19	기숙사 방안에서 식사하는 행위	2점
20	기숙사내에서 애반동물들 반입 및 사육하는 행위	2점
21	기숙사의 퇴사 일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	2점
22	그밖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	1점-퇴사

<div> <div>▶ 벌점</div> <div>▶ 상경</div> </div>

[상경기준표]		
번호	내용	상경
1	화장실 청소(1일 2시간)	0.5점
2	컴퓨터실, 휴게실, 독서실 등 공동구간 청소(1일 2시간)	0.5점
3	음금 구조 및 간병 등의 봉사를 한 이(월 2회)	1점
4	생활관 사무실 근로활동을 한 이(1일 3시간 주 3회)	1점
5	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행위(각종 선행활동, 봉사활동)	0.5-2점

제 5장 생활

[제24조 강제퇴사처분]

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장은 입사자를 퇴사 처분할 수 있다

<div> <div>▶ 학교 등록 미필자</div> <div>▶ 기숙사 납부금을 미납했거나 체납한 자</div> <div>▶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.5/4.0 또는 2.7/4.3 미만인 자</div> <div>▶ 학칙 및 생활관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</div> <div>▶ 생활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</div> <div>▶ 제7조에 의한 입사등록을 미필한 자</div> <div>▶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</div> </div>

• 전항의 퇴사처분은 생활관장이 결정한다.

• 제1항의 퇴사처분을 참에 있어서 해당자의 진술기회를 부여한다.

• 제1항의 퇴사처분은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
• 제1항의 4, 5호 인하여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생활관장은 해당대학에 강제퇴사처분 내용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• 제24조에 의하여 강제퇴사처분 처분 받은 학생은 이후 기숙사 입사가 불가하다

[제25조 자진퇴사]

• 생활관을 자진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공휴일을 포함한 10일전까지 퇴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생활관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• 입사 중 휴학자는 휴학 후 10일 이내 퇴사하여야 한다.

• 생활관장은 전항의 자진퇴사신고를 수리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 또는 공고한다.

[제26조 퇴사결자]

•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.

• 자진퇴사를 신고한 자는 퇴사신고서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신청 일자일에 퇴사하여야 한다.

• 1항 및 제2항의 퇴사자는 퇴사 시 사생증 또는 출입증의 반환 등 퇴사에 따르는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부칙

[제24조 강제퇴사처분]

• 이 내규는 199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• 제1항 내규(제4조, 제6조, 제23조, 제24조)는 199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

• 이 개정내규(제4조 1항 ①)는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

• 이 개정내규(제4조 1항 ①, 제5조 1항 ②, 2항, 제6조 1항 ③, 제9조 1항, 제10조 3항, 제11조 2항, 제12조 1항, 2항, 3항, 제14조 1항 ①, ②, ③, 제18조 1항 ①, ②, 제21조 3항, 제22조 1항 ②, 벌점 기준표 3항, 4항, 11항, 12항, 13항, 15항, 19항)는 200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• 이 개정내규(제5조 ②항, 제 6조 1호, 2호, 4호, 5호, 제 10조 ③항, 제 12조 ③항 단서, 제14조 14호, 제 15조 ③항 신설, 제 19조 ①항, ③항 삭제, 제 21조 ①항, ②항 삭제, ③항, 제 22조 신설, 제 23조 1호, 2호)는 200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

• 이 개정내규(제5조 제1항 1호)는 200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